

채굴계획 []인 가 신청서
[]변경인가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40일		
신청인 (채굴권자)	상호 또는 명칭			설립연월일				
	성명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
	주소			(전화번호:)				
채굴권의 표시	광구 소재지							
	등록번호		제 호		광업지적		지적 호	
	광종명		광		면적		헥타르	
광산명								
채굴계획 변경사유								

「광업법」 제42조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계획의 []인가 []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채굴계획서 1부 2. 측량실측도 3부(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합니다)	수수료
		수입증지 채굴계획인가: 52,000원 채굴계획변경인가: 26,000원 (뒤쪽에 붙임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